

제 1580 호
1991. 7. 20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이 해 원
편집인: 공 보 관 이 상 진
전 화: 731-8111~3
인 쇄: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273-8111~3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2422 호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3
● 고 시	
제 224 호 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	15
● 공 고	
제 21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15
제 219 호 판인제교부공고	25
● 예 규	
제 534 호 서울특별시유보물제작에관한지침중개정지침	26

(이면계속)

영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마음은 깨끗하게 행동은 떳떳하게”

● 구 고 시

제 9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영등포) 27

제 13 호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지적승인(중구) 28

제 27 호 정정고시(도봉) 28

제 3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노원) 31

● 구 공 고

제 14 호 관인교부공고추가계약(은평) 31

제 86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구로) 32

제 115 호 관인개각공고(중구) 32

제 116 호 전문건설업면허취소공고(중구) 33

제 200 호 관인및계인개각승인및폐인공고(노원) 33

● 사업소고시

제 37 호 하천점용허가 34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7. 20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422호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민생활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시민생활국청소2과장으로 한다.

제4조(학자금대여신청 및 지출) 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1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1월3일부터 2월말일까지, 2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학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통
2.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조례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 1통(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을 제출한 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대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학자금대여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학자금대여지출을 하되, 대여대상 환경미화원의 구좌에 입금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대여기록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신상변동신고 등) 학자금을 대여받은 환경미화원은 그 자녀의 신상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대여환경미화원자녀신상변동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학자금의 상환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은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개시 6월 전까지 대여금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대여학자금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학자금대여 상환카드에 각각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장부)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제8조(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수입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로,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월별로 각각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별지 제2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증세 호							
계	계 장	과 장	출납명령관	년도	계	계 장	출납공무원
				환경 기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세 출 과 목			
발 의			관		발 의		인
원인행위			항		지출부등기		인
부 등 기			세항		지 급 명 령 발행부등기		인
			목		지 급 명 령 번 호	계 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10px 0;">금 _____ 원정</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_____</div>							
적 요							
채 주	주소 _____ 소속 _____ 성명 _____						
영 수 인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_____ 월 _____ 일 성 명 _____ 인						
주산필				은행	은행 지점		
				구좌	구좌번호 _____		
인					예 금 주 _____		

학자금대여기록표							
(별지 제3호서식)							
환경미화원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한글	한자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학과년 (국, 공, 사립)		
대여횟수	구분 학년	대여일자	대여금액	보증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여점명	확인인
				소속			
1	학년 학기						
2	학년 학기						
3	학년 학기						
4	학년 학기						
5	학년 학기						
6	학년 학기						
7	학년 학기						
8	학년 학기						
9	학년 학기						
10	학년 학기						
11	학년 학기						
12	학년 학기						

295mm×210mm(인쇄용지:복합 120g/m²)

※ 참고 : 1. 학년관은 통학대상 학년 및 학기를 표시
 2. 대여일자, 대여금액, 대여점포명은 대여점포로부터 송부되는 영수증등기서에 의하여 기재

(별지 제5호서식)				
김 수 결 의 서				
중재 호				
출납명령판		발 의	년 월 일	인
		고지서발송	년 월 일	인
과 장		납입기한	년 월 일	
계 장		김수부등기	년 월 일	
계		고지서번호	계 호	
19 년도 월분	(판)	(합)	(목)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금 원정 W				
납입자주소·성명				
적				
요				

<별지 제6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	년도 월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관)	(항)	
(목)		

제 호	년도 월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관)	(항)	
(목)		

제 호	년도 월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관)	(항)	
(목)		

일금

일금

일금

₩ _____

₩ _____

₩ _____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상기 금액을 영수함.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시금고 인

시금고 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소속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정수관 귀하

(납부자) 귀하

귀하

납 입 자				
영 수 관 인	위 급 지 인			
수 입 금 관 인	기 장 인			

34-9

별 1580 호 시 도 1991.7.20

(별시 제7호서식)
학자금대역상환카드

환경미화원				학 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학과					
학교구분	년제 국, 공, 사립	대여횟수	회	대역총금액	원	졸업 증퇴	년월		
최초 상환개시	년월	상환종료	년월	1회-최종 잔액상환액	원	일시 상환액			
구분 회수	상환일자	금액	누계	확인	구분 회수	상환일자	금액	누계	확인
1					20				
2					21				
3					22				
4					23				
5					24				
6					25				
7					26				
8					27				
9					28				
10					29				
11					30				
12					31				
13					32				
14					33				
15					34				
16					35				
17					36				
18									
19					합계				

295mm×210mm(인쇄용지:복합 120g/m²)

- 졸업, 증퇴일: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확인 후 해당란에 ○표 및 연월 기재
- 상환개시 연월: 졸업일로부터 2년 경과되는 해의 연월을 기재
- 상환종료 연월: 최종 상환종료 연월을 기재
- 최종 상환일에 상환총금액을 기재 대역총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 상환일: 상환금액을 은행에 납부한 날짜를 기재(보수 지급기준일 5일 이내)

※ 학생 1인당 1매 사용

〈별지 제10호서식〉						
지 급 명 령 부						
연월일	계주	지급명령 번호	과 무		지급명령 발행액	비 고
			관	항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24호

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관지구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였기 같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1. 7. 20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 미관지구 변경결정조서

구분	종별	위 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2종	마장동~왕십리 4거리 미도극장~중앙극장	2,500	60,000	
변경	2종	"	2,500	60,000	• 미도극장~중앙극장간 중 길음교~왕암교간 연장 990m 구간의 정통길 복개 도로변 복측 위치변경 • 폭 12m
기정	3종	금정동~정릉입구	6,800	169,200	
변경	3종	"	6,800	169,200	• 정릉동 966의 1~길음교간 연장1,220m 구간의 정통길 복개도로변 복측 위치변경 • 폭 12m
기정	4종	장위동~우이동	11,750	282,000	
변경	4종	"	11,830	280,500	• 장위동 158의 5~장위동 135의 1간 연장 430m 구 간의 한천로 도로선형 변경 에 따른 위치변경 • 폭 12m

나. 관계도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215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
계획공람공고**

1. 건고 제145호(78.6.15)로 시설결정되고 서고 제295호(79.7.31)로 지적고시된 관악로 확장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인가로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같음한다.

3. 관련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가. 공람장소 : 동작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91. 7. 20
 서울특별시

○ 공람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도로계획시설 (도로)결정	지적고시
상도동 159의 271~284의3	관악로 확장 공사	B=20~40 L=23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91.7. ~ 92. 12.31	건고제145호 (78.6.15)	서고제295호 (79.7.31)

1. 수용 또는 사용토지, 건물(지장물)의 소재, 지번, 및 소유권 관리명세 : 생략
 2.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생략
 3.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 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람.

토 지 조 서

사업의 종류 : 관악로 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면적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상도동 159-271	대	97	97	김중희	성북구 장위동 219-231	김만식	도봉구 수유동 530-27	소유권이의 권리의종류내용 전 청구권 가동기(매매예약)
2	" 159-272	대	99	99	윤홍식	상도동 159-25	조홍 은행	중구 남대문로1가 14	근저당권
3	" 159-273	대	121	121	한중자	서초구 반포동 60-4 반포미도(㉠) 306-1106			
4	" 159-274	대	79	79	김종복	상도동 159-27			
5	" 159-276	대	30	30	박중영 외3인	상도동 159-89	국(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특별시(동작구청)	가치분 가압류	
6	" 159-277	대	42	42	"	"	국(서울민사지방법원)	예고등기 가치분	
7	" 159-275	대	163	163	"	"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력의 비고 권리의종류내용
8	상도1동 382	대	430.1	430.1		홍관식의 외9인	사당동 205 한남연립 3-105			551.8 ㎡
9	" 381	대	236.7	236.7		홍관식의 외11인	"			
10	" 380	대	235.7	235.7		박상찬	노랑진동 309-14			
11	" 379	대	235.7	235.7		권창국	상도1동 379			
12	" 378-1	대	241.7	241.7		김우량	서대문구 현저동 104-21			
13	" 250	대	234.4	234.4		이상오	강동구 명일 동 42 우성 A 6-402			
14	" 251-1	대	135.5	135.5		윤금숙	강남구 방배 동 873-8			
15	" 251-2	대	99.8	99.8		강영태 외3인	상도1동 251			
16	" 252-1	대	109.8	109.8		김원곤	상도1동 252-1			
17	" 252-2	대	126.3	126.3		김용호	상도1동 252-2			
18	" 253-1	대	99.5	99.5		맹덕호	관악구 봉천 동 7-55			
19	" 253-2	대	132.9	132.9		송인용	상도1동 253-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압류
20	" 254-1	대	11.9	11.9		"	"			
21	" 254-4	대	37.0	37.0		"	"			
22	" 254-3	대	310.0	310.0		노승열	영등포구 영 등포동3가 469-1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압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내용	
23	상도1동 255-3	대	109.1	109.1		권혁한	상도1동 255-3				
24	" 256	대	236.0	236.0		"	"				
25	" 257	대	228.4	228.4		"	"				
26	" 280-1	대	95.8	95.8		최명수	상도동 134-136				
27	" 280-2	대	110.1	110.1		추영진	중구 신당동 75-5				
28	" 280-3	대	36.4	36.4		박병수	상도1동 280-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압류	
29	" 281-1	대	208.6	208.6		장창근	상도1동 281-1				
30	" 281-3	대	46.3	46.3		안영심	상도동 134-74	동지신용 협동조합	마포구 도화 동 538	근저당권 3회	
31	" 282-1	대	88.3	88.3		여상해	상도1동 282-1				
32	" 282-2	대	167.6	167.6		박초문	인천시 북구 계산동 321 -2 열방㉠ 6-517	장정호	강서구 화곡 동 778-10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동기(매 매계약)	
33	" 283-1	대	77.3	77.3		한영순	상도1동 283-1				
34	" 283-2	대	164.0	164.0		이시호	동작구 신대 방동 565 우 성㉠ 1-205	상업은행	중구 남대문 로2가 111-1	근저당권 2회	
35	" 284-1	대	103.1	103.1		박정휘	상도1동 284-1				
36	" 284-2	대	105.8	105.8		임일용	과천시 부림 동 41 주공 ㉠ 803- 1007	코오동 (주) 45	중구 무교동	근저당권	
37	" 284-3	대	62.1	62.1		"	"	"	"	"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유 관리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상도동 159-9	건물	시멘벽돌조 연와조와즙	22	주택	안정무	상도동 159-9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 로2가 9-1	근저당
		수목		2주						
		담장	시멘블럭	10×2						
2	" 159-25	건물	시멘벽돌조	11	주택	윤홍식	상도동 159-25	업익환	상도동 159-25	전세권
		화장실	시멘슬라브	2				조흥은행	남대문로1 가 14	근저당
		담장	시멘벽돌조	10×2						
		수목		3주						
3	" 159-26	창고	시멘블럭조	1		이동벽	강남대치동 511 한보미 도넨천 110 -1404	신한은행	중구 대평 로2가 120	근저당
		담장	시멘블럭조	19×1						
		건물	시멘벽돌조	1				제일은행	중로구 공 평동 100	
		수목		4주						
4	" 159-27	건물	연와조 시멘와즙	22	주택	김종택	상도동 159-27			
		담장	시멘블럭	17×1						
		창고	시멘슬레드	22						
		정화조		1식						
5	" 159-142	건물	시멘와즙	25	주택	백사인	상도동 159-89			
		화장실	시멘벽돌조	2						
		담장	시멘벽돌	4×1.5						
6	" 159-89	건물	시멘벽돌조 시멘와즙	49	주택 (1층41 지층8)	최영근	상도동 159-89			
		"	"	15	주택					
		수목		2주						
		담장		12×2						
		정화조		1식						
7	상도1동 382	건물	시멘벽돌조 시멘와즙	219.4	주택 1층 154 2층 94	홍관식 외 11인	사당동 205 한남연립 3-10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		인 소유권의 권리의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상도1동 382	건물	시멘트벽돌조	133.4	1층 66.7						
			시멘트와즙			2층 66.7					
			"	"	34.6						
			경화조			2식					
			수목			4주					
		담장			10×2						
		대문			1식						
8	"	381	건물	시멘트와즙	36.3		홍태식	상도1동 381			
9	" 380	건물	시멘트와즙	56.7		박상찬	노량진동 309-14				
			"	시멘트평옥계	131.37	1층 91.7 2층 39.6 점포					
			수목			5주					
			경화조			1식					
			대문			1식					
			화장실	시멘트블럭조	3.1						
		담장	시멘트블럭	3×2							
10	" 379	건물	철근콘크리트 평옥계	368.14		주택, 권창국 점포	상도1동 379			1층 164 2층 102 3층 102	
			"	시멘트슬래브 시멘트블럭	26.6 3.2	주택					
			대문			1식					
			경화조			1식					
11	" 378-1	건물	철근콘크리트 평옥계	690.8	1층 233.8 2층 233.8 3층 233.8 4층 233.8	김우향	서대문구 현저동 104-21				
			경화조			2식					
			수목			4주					
12	" 251-1	건물	연와조와즙	66.1		주택 윤금숙	방배동 873-8				
			담장	시멘트블럭	20×1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관계인				소유권여부 권리의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2	상도1동 251-1	대문		1식							
13	" 251-1,2	건물	평옥개 시멘와즙	51.4	주택	강영태 외3인	상도1동 252-1				
		장독대	시멘블럭	2.0							
		수목		3주							
		대문		1식							
14	" 252-1	건물	시멘와즙	40.2	주택	김원곤	상도1동 252-1				
		화장실	시멘블럭	2.1							
		담장	"	13.5×15 10×1.8 3×2.2							
		수목		12주							
15	" 252-2	건물		58.4	주택						
		장독대	시멘블럭	4.1							
		대문		1식							
		담장		7×2							
16	" 253-1	건물	목조와즙	90.3	주택	백낙호 점포	봉천동 7-55				
		대문		1식							
		정화조		1식							
17	" 253-2	건물	목조와즙	51.1	주택	송인웅	상도1동 253-2				
		장독대	시멘블럭	5.8							
		건물	시멘슬레트	22.3							
		대문		1식							
		수목		5주							
18	" 254-3	건물	철근콘크리 트 평옥개	387.9	주택,점포 3층건물 129.3×3	노승열	영동포3가 469-17				
		"	시멘블럭조 시멘와즙	80.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세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8	상도1동 254-3	건물	시멘슬래트	16.1						
			정화조	1식						
			담장	7×2						
			대문	1식						
19	" 280-1	건물	목조와즙	63.2	주택	최명수	상도동 134-139			
			담장	7×2						
			대문	1식						
20	" 280, 281	건물	시멘벽돌조	22.9	주택	박명수	상도1동 280-3			
			시멘와즙							
		옥탑	시멘블럭	12.5						
		정화조	1식							
21	" 280-2	건물	목조와즙	49.0	주택	우영진	신당동 75-5			
			"	시멘벽돌조	31.2					
			화장실	시멘블럭	2.1					
			대문	1식						
22	" 281-1	건물	목조와즙	96.0	주택	장창근	상도1동 281-1			
			화장실	1.1						
			"	1.4						
			장독대	10.3						
			대문	1식						
23	" 281-3 282-3	건물	시멘블럭	33.0	주택	안영삼	상도동 134-74	동과신용	마포구 도	근저당
			시멘와즙					협동조합	화봉 538	
		장독대	시멘블럭	6.4						
		담장		5×1.8						
24	" 282-1	건물	목조와즙	55.2	주택	이상해	상도1동 282-1			
			화장실	시멘벽돌	2.1					
			수목		2주					
			담장		10×1.5					
		대문		1식						

일련 번호	소재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실제 이용 상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의 변경 이전 청구권 가등기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5	상도1동 282-2	건물	연와조평옥 개	109.5	주택 1층 35.3 2층 74.2	박초문	인천시 북 구 계산동 321-2 열방 ㉠ 6-517	장정호	강서구 화 곡동 778- 10	이전 청구권 가등기
25	상도1동 282-2	창고	시멘트벽돌조	6.1						
		화장실		2.0						
		수목		6주						
		정화조		1식						
		대문		1식						
		담장		7.2×2						
26	" 283-1	건물	목조와즙	62.0	주택	한영순	상도1동 283-1			
		화장실	시멘트벽 돌조	1.1						
		담장		5×2						
		대문		1식						
27	" 283-2	건물	연와조시멘 트와즙	140.1	주택 1층 49.0 2층 91.1	이시호	상도1동 283-2			
		화장실	시멘트벽 돌조	4.2						
		정화조		1식						
		대문		1식						
		담장		9×1.8						
28	" 284-1	건물	철근콘크리 트 평옥개	14.2	주택 1층 71.0 2층 71.0	박정의	상도1동 284-1			
		창고	시멘트벽 돌조	4.2						
		정화조		1식						
29	" 284-3	건물	연와조평옥 개	106.0	주택 1층 303.1 지하 22.9	임일웅	과천시 부 림동 41 주공 ㉠ 803-1007	(주) 흥구 무교 로봉 동 45		인적당
		창독대	시멘트벽 돌조	5.2						
		수목		6주						
		정화조		1식						
		대문		1식						
		담장		8×1.5						

물 건 조 서 (영 업 권)										
사업의 종류 : 관악로 확장공사(3차)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상도1동 382	영업권	미림조각			임성현	상도1동 387-3			
2	"	"	담배가게			송준환	" 382			
3	"	"	벨엘까운			김상금	" 383-2			
4	"	"	수도욕공소			이우고	"			
5	"	"	삼성오토바이			유춘석	"			
6	"	"	청다방			강진애	"			
7	"	"	승전설비			박병권	" 381			
8	"	"	진홍카센터			김광제	"			
9	"	"	상도주차장			홍태식	"			
10	"	"	청파부동산			오영일	" 380			
11	"	"	형제급속			유남수	"			
12	"	"	강남여인숙			신상철	" 379			
13	"	"	보신탕집			백원기	"			
14	"	"	우원이발			윤의성	서대문 북 아현동 158-4			
15	"	"	코스모스카페			김환원	상도1동 378-1			
16	"	"	25시			김경심	"			
17	"	"	남성복 할인매점			성우경	"			
18	"	"	삼일여관			임순분	"			
19	"	"	금은세공			임병철	"			
20	"	"	영남목재			신쌍동	상도동 159-89			
21	"	"	상도장외사			유석산	용암동 674-10			
22	"	"	미성사			심달유	상도1동 254-3			

일련 번호	소재지 번 호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인명(비고) 관련회내주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3	상도1동 254-3	영입권	동압당			장주규	상도1동 254-3			
24	" 257	"	삼일주차장			이재희	상도1동 257			
25	" 280-1	"	명진기업사			정윤식	상도1동 280-1			
26	" 280-2	"	명성식품			이상연	상도1동 280-2			
27	" 281-1	"	한진목공소			장창근	상도1동 281-1			
28	" 282-1	"	상도한복			여상해	상도1동 282-1			
29	"	"	상도미성			서세진	상도1동 282-1			
30	"	"	통일부동산			임학관	"			
31	" 283-1	"	현대양복점			이병한	283-1			
32	" 284-1	"	서문서점			조길상	상도동 284-1			
33	"	"	문방구점			김복녀	"			
34	"	"	동작부동산			탁남미	"			

●서울특별시공고제219호

관인재교부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효적동·초본용)"관
인 재교부 사항을 서울특별시관인규칙 제
5조 규정에 의거 재교부함을 통 규칙 제8


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1. 7. 20

서울특별시장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1991년 7월 24일
2. 관인 재교부 내역: 별첨

승 인 인 영

구 분	승 인 내 역
구 인 영 (폐기인영)	 (중구청장직인-효적동·초본용:인증기용)

신 인 영 (재교부인영)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중구청장의인-호적등·초본용 : 인중기용)</p>
------------------	---

예 규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에관한지침중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1. 7. 20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㉞

●서울특별시에규제534호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에관한지침중
개정지침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에관한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에관한지침중 "제작"을 "제작심의"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제작에 관한"을 "제작심의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작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제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정연구관 및 공보관이 되며, 위원은 홍보계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행정과장,

문화과장과 전현직 언론인 및 홍보물제작 관련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제2조제3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매분기 첫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소집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②간사는 공보관소속 공보계장이 되고, 서기는 공보계소속 직원이 담당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본청 주관과장 및 사업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매분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작, 발간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시 또는 긴급히 제작되어야 하는 홍보물에 대하여는 사유 발생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홍보물제작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중 "공보판에게"를 "위원회"로 하며 동항 제1호중 "신문"을 삭제하고 "화보"다음에 "반상회보"를 삽입하며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심의홍보물의 사후조치) ①홍보계획 담당관은 심의를 받은 홍보물 제작관련

<p>문서에 날인하여 심의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별지2호 서식의 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②주된과장 및 회계담당부서장은 심의위원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의 제작에 관련된 회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p><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외부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 지침에 의한 위원으로 본다.</p> <p>③(폐지지침)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심의지침(공보1740-621,82,12,24)은 이를 폐지한다.</p>										
<p>시장홍보물심의대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연번</th> <th style="width: 10%;">월일일</th> <th style="width: 10%;">종류</th> <th style="width: 25%;">홍보물명</th> <th style="width: 50%;">심의여부주관과</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연번	월일일	종류	홍보물명	심의여부주관과					
연번	월일일	종류	홍보물명	심의여부주관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20px; margin-bottom: 10px;"> <p style="margin: 0;">구 고 시</p> </div> <p>●영등포구고시제9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 나.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 7. 20 영 등 포 구 청 장</p> <p>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p>									

- 한전 당산동직장주택조합
- 한기 당산동직장주택조합
- (주)호텔 제2차 롯데직장주택조합
- 국군 제1363부대 제4차직장주택조합
- (주)우성산업직장주택조합
- 당산동현대지역주택조합
- 중구지역주택조합
- (주)삼성전자 당산동직장주택조합

●중구고시제13호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151호(91.3.5)로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본선, 정거장) 결정고시된 지하철 5호선 우리 구 관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정비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7. 20
중 구 청 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2가 47~1,8,9호
 나. 대지 면적: 25,627.54㎡
 다. 건축연면적: 97,947.79㎡
 라. 규 모: 지하1층, 지상20층
 마. 사업시행기간: 91. 7~93.5

가.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본선, 정거장) 지적승인 조사

구 분	사 설 명	위 치	규 도	비 고
신설	고속철도(본선)	중구 주교동 140-16번지 일대~	L=2,013m	
		중구 신당동 328번지 일대		
	정거장	율지4가 정거장 (중구 주교동 122번지 일대)	A=3,630㎡	
		광희 정거장 (중구 쌍림동 215번지 일대)	A=3,960㎡	
		홍인국교 정거장 (중구 신당동 295번지 일대)	A=3,630㎡	

나. 고시도면: 중구청 비치도면과 같음. 정고시한다.

●도봉구고시제27호 1991. 7. 20

도 봉 구 청 장

정정고시

시보 제1550호(91.3.15)에 게재된 도봉구고시 제26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내용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

1. 사업명칭: 미야4동~변동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2. 정정내용: 별첨

정정내용											
구 분	오					정					
사 업	미아4동 66외5~미아동 산35-1 및 번동 310-5~번					미아4동 66외5~미아동 산25-18 및 번동 310-5~					
시 행 지	동 148의 429					번동 148-429					
규 모	B=20m L=80m					B=20m L=950m					
토지조서	소재지	지목	지적 (㎡)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지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미아동 87-212	전	15	미아동 89-1	고 갑 석	미아동 87-212	대	15	미아동 54-217	권 오 상	근 지 당 중소기업은행 (안암동지점) 중구읍지로2가50
	미아동 3-56	대	27	미아동 3-56	천 삼 욱	미아동 3-887	대	27	미아동 3-56	천 삼 욱	
	번 동 306-22	대	3	번 동 306-5	최 승 복	번 동 306-22	대	3	번 동 306-5	최 승 복	
	번 동 306-32	대	150	번 동 306-5	최 승 복	번 동 306-32	대	150	번 동 306-5	최 승 복	
						미아동 산25-18	분묘지	6,764	종로 연지 68-4	(주) 한 국 신 탁 은행	

이하는 정과 같습니다.

구분 지장 주소	정						오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소재지	물건의 규격	구조 및 종류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미아동 87-62	건물	슬라브/ 벽돌	18	미아동 86-62	권오상	미아동 87-89	건물	슬라브/ 벽돌	19	미아동 54-217	권오상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안암동지점) 서울중구율지 2가50	
								가건물 목조/ 스택타	21				
미아동 3-56	건물 가건물	슬라브/ 블럭 선라이트 목	20 5	미아동 3-56	천삼윤	미아동 3-56	건물 가건물	슬라브/ 블럭 선라이트 / 목재	20 5	미아동 3-56	천삼윤		
						미아동 3-56	영업손실 (창성건재)		1식	미아동 3-56	최효수		
						미아동 3-882 3-883 3-884	나무		106주	미아동 67-1	정홍조		
						미아동 66-2	영업손실 (미복목광소)		1식	미아동 66-2	김동선		
						미아동 66-2	영업손실 (양성타이푸)		1식	미아동 66-3	유성순		
						미아동 66-2	영업손실 (새한타트철비)		1식	미아동 66-3	주검수		
						미아동 66-5	영업손실 (광명광고)		1식	미아동 66-3	이병준		

이하는 전과 같습니다.

제 1380 호

나

부

1991. 7. 20

34-30

3831

●노원구고시제37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
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1.7.20

노 원 구 청 장

1. 사업명: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채신부
제8각장주택조합 외 3개조합
3.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치:상계동 산 143 의 7필지
나. 대지 면적:7,770.44㎡
다. 건축면적:28,974.85㎡
라. 규모:아파트 14층 2동 230세대
(부대시설:노인정 및 관리동, 판
매시설)
마. 사업시행기간:91.7~92.12
4. 도시계획 변경:없음

5. 부대복리시설(상가)의 분양

가. 규모: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97.06㎡

나. 분양시기, 방법: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분양

구 공 고

●은평구공고제14호

관인교부공고추가계제

시보 제1576호(91.7.8)에 제제된 은평구
공고 제14호 관인교부공고에 별첨 용암 제
3동장, 수색동장의 인영부가 누락되었기에
추가계제합니다.

1991.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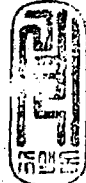


은 평 구 청 장









별첨:인영부

인 영 부

○ 교 부

교 부 인 영		
공인명	용암 제3동장인(민원사무 전용)	계인(용암제3동)
○ 패 기		
패 기 인 영		
공인명	용암 제3동장인(민원사무 전용)	계인(용암제3동)

○ 교 부							
교부인영							
공인명	수색동장인(민원사무 전용)			제인(수색동)			
○ 폐 기							
폐기인영							
공인명	수색동장인(민원사무 전용)			제인(수색동)			
<p>●구로구공고제86호</p> <p>전문건설업양도인가</p> <p>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p> <p>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p>				<p>기에 동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p> <p>1991.7.20</p> <p>구로구청장</p>			
인가일자	양도업종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대표자	소 재 지	대표자
91.7.15	창호 83-08-137 철물 83-11-269	동양금속 공 업	구로구 은수동 35-3	노은섭	송 현 전업(주)	강남구 논현동 240-7	최상술 김진영
<p>●중구공고제115호</p> <p>관인개각공고</p> <p>서울특별시중구관인규칙 제5조의 규정에</p> <p>의거, 아래와 같이 동장 관인을 개각 및 폐</p> <p>기 승인하고, 동 규칙 제8조에 의거 공고합</p> <p>니다.</p>				<p>1991.7.20</p> <p>중 구 청 장</p> <p>1. 관인명칭:희현동장인</p> <p>2. 사용개시일:1991.7.21</p> <p>3. 개각 및 폐기 인영:별첨</p>			

인 영 부						
구 직 인	신 규 조 각 인					
						
<p>●중구공고제116호 전문건설업면허취소공고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전문건설업면허 자진 반납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면허를 취소하였기 공고합니다. 1991.7.20 중 구 청 장</p>						
취 소 내 역						
면허번호	업 종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제 지	취 소 사유	취 소 인 자
서울 05-14	도장 공사업	(단)태덕건설	지신근	중구 신당 360-3	자진반납	
<p>●노원구공고제200호 판인및계인개각승인및폐인공고 서울특별시노원구판인규칙 제2, 3, 5조에 의거 상계제7동장 민원사무 전용 판인 및 민원사무용 계인의 개각 사용을 승인하며 동규칙 제6조에 의거 기사용중인 판인 및 계인을 폐인하고 동규칙 제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p>		<p>1991.7.18 노 원 구 청 장 가. 판인 및 계인 개각 기관(판인명) ○ 상계제7동장의인(민원사무 전용 판인) ○ 상계제7동(민원사무용 계인) 나. 사용개시일:1991.7.19. 09:00 다. 개각 및 폐기 판인 및 계인 인영:따로 붙임</p>				
인 영 부						
구분	신 인 영 (개 각)			구 인 영 (폐 기)		
	일반사무용		민원사무용	일반사무용		민원사무용
	직 인	계 인	계 인	직 인	계 인	계 인
상 계 제7동장						

사업소고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3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1.7.20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허가 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 면적	점용 목적	점용기간	허가권 받은 자	
						주 소	성 명
91.7.13	서울특별시 성동 구 자양동 427-7 번지선 한강	하천	724㎡	유선장	91.7.14~ 92.7.13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9-1	(주)로얄관광 대 표이사 손용근

사 령

지방별정직 공무원 신규임용

●1991년 7월 15일자

영 제262호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정 문 호	지방별정직 4급상당 공무원에 임함. 시의회사무국 근무를 명함. 의장비서관에 보함.	신 규

인사발령통지

●1991년 7월 12일자

영 제263호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보험연금과 지방서기관 차 천 복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보험연금과장에 보함.	91.7.12 대 통 령
--	---------------